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

[정순기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229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2. 9. 6.

발 의 자 : 정순기 의원

찬 성 자 : 도병두 의원

1. 제안이유

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 위기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상호 지원체계 구축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라.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(안 제4조, 제5조)
- 마.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(안 제6조)
- 바.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및 협력(안 제7조, 제8조)
- 사.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정지원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 : 2022. 9. 7. ~ 2022. 9. 14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정신질환자”란 망상, 환각, 사고(思考)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정신건강복지센터”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3. “정신건강증진시설”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.
4. “응급정신질환자”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이 중대한 위해(危害)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”란 정신질환,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

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
6. “응급입원 등 후송비용”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·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,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
1.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
2.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
3.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협의체 구성 및 운영)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

이내로 구성한다.

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.

③ 금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금천구의회

2. 금천경찰서

3. 금천소방서

4.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

5. 정신건강증진시설

6.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

7. 복지 기관 단체
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사업 추진)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·육성 사업
2.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
3.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
4.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7조(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)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,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·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원)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
2.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
3. 심리평가, 개인상담,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
4.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4. 8.] [법률 제17217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신질환을 예방·치료하며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 지도·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,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23.>